#### ●김해시 고시 제2024-237호

##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따라 김해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수립 및 고시합니다

## 2024년 7월 12일 김 해 시 장

## 1. 산업단지 개요 (변경)

#### 가.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(변경없음)

○ 관리기관 : 김해시(김해시 김해대로 2401)

○ 산업단지 위치

구 분	소 재 지	면 적 (m²)
기정	경상남도 김해시 산본리 산13-2번지 일원(송현리 포함)	162,182.0
변경	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1191-13번지 일원	162,491.6

#### 나. 조성목적 (변경없음)

-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의 계획적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
-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실입주자의 개발의지를 부합하는 효율적·친환경적 단지 조성

#### 다. 추진경위 (변경)

○ 2015.07.30 :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 지정요청 접수(사업시행자→김해시)

○ 2015.08.03.~08.24 :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(21일간)

○ 2015.08.10 :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합동설명회 개최

○ 2016.02.18 :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심의

○ 2016.03.17 :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(김해시고시 제2016-83호)

○ 2018.03.15 :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(김해시고시 제2018-67호)

○ 2019.09.20 :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(김해시고시 제2019-241호)

○ 2019.10.18 :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(김해시고시 제2019-269호)

○ 2020.03.20 :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(김해시고시 제2020-82호)

○ 2021.01.15 :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(김해시고시 제2021-16호)

○ 2021.01.29 :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(김해시 고시 제2021-33호)

○ 2021.05.14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21-175호) : 사업시행자 변경

○ 2021.09.24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21-342호) : 사업시행자 변경

○ 2021.10.22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21-380호) : 유치업종 등 변경

○ 2021.12.31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21-465호) : 개발기간 변경

○ 2022.01.28 : 관리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지형도면고시(김해시 고시 제2022-41호)

○ 2022.02.25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22-64호) : 사업시행자 변경

○ 2022.06.24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22-181호) : 유치업종 등 변경

○ 2022.07.22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22-219호) : 확정측량 결과 반영

○ 2022.08.05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22-227호) : 정정

○ 2022.08.19 : 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 (김해시 공고 제2022-3709호)

○ 2023.01.12 : 산업단지 준공인가(변경) 및 환지처분 공고 (김해시 공고 제2023-117호)

○ 2024.07.04 :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24-224호)

## 라. 분양현황 및 계획(변경)

#### - 기정

	초머지		분 양 가 능 면 적(㎡)					
구 분	총면적 (㎡)	분양	미 분 양			 계	조성 기간	조성기관
	(1117)	Ψδ	조성	조성중	소계	741	/ 1건 	
합 계	162,182	-	-	112,710	112,710	112,710	_	
산업시설 구 역	106,804	-	-	106,804	106,804	106,804		
지원시설 구 역	2,404	-	_	2,404	2,404	2,404	2015.	㈜제이 외 30개사
공공시설 구 역	32,270	_	_	3,502	3,502	3,502	2022. 12.31	30/11/15
녹 지 구 역	20,704	-	_	-	_	_		

#### - 변경

	초머지		분 양 가 능 면 적(㎡)					
구 분	총면적 (㎡)	분양		미 분 양	;	계	조성 기간	조성기관
	(1117)	ਧਰ	조성	조성중	소계	711		
합 계	162,491.6	112,704.8	-	_	_	112,704.8		
산업시설 구 역	106,836.5	106,836.5	-	_	_	106,836.5	2015	
지원시설 구 역	2,381.8	2,381.8	_	_	_	2,381.8	2015. ~ 2022.	㈜구보 외 30개사
공공시설 구 역	32,289.1	3,486.5	-	-	-	3,486.5	12.31	30/11/15
녹 지 구 역	20,984.2	-	-	_	_	_		

## 마. 입주계획 (변경)

#### - 기정

그ㅂ	업체수		면	비고		
구 분	산업시설	기타	산업시설	기타(지원시설)	비고	
합 계	28	-	106,804	_	_	

#### - 변경

그ㅂ	업체수		면	비고		
一	산업시설	기타	산업시설	기타(지원시설)	H177	
합 계	31	-	106,936.5	-	_	

## 바. 입지여건 (변경)

## - 기정

시설명	'22. 1월 현재	확충계획				
기결정	22. 1월 선계	일정	규모	시행기관		
도 로	•남해고속도로 진례IC 인접 •군도3호선 인접	'15년 이후 ~ 2022년	•진입도로 확충 (B=10m, L=240m)	(주)제이 : 사업시행자		
철 도	•진례역 이용	-	-	_		
용수	•김해시 광역상수도 인입 •소요용수량 : 362.6㎡/일	_	_	-		
전 력	•33,155MWH/년 계획	_	-	_		
통 신	•전화회선수 : 61회선 계획	_	-	_		
오 수 처 리	•진례맑은물순환센터 •발생량 : 61.6톤/일 계획	-	-	-		
폐기물 처리	•발생량 : 143.5톤/년 계획	-	-	-		

## - 변경

2) 2d ml	40A 7이 원 제	확충계획				
시설명	'24. 7월 현재	일정	규모	시행기관		
도 로	•남해고속도로 진례IC 인접 •군도3호선 인접	'15년 이후 ~ 2022년	•진입도로 확충 (B=10m, L=240m)	(주)구보 : 사업시행자		
철 도	•진례역 이용	_	-	-		
용수	•김해시 광역상수도 인입 •소요용수량 : 360.3㎡/일	-	-	-		
전 력	•33,206MWH/년 계획	_	-	_		
통 신	•전화회선수 : 62회선 계획	_	-	-		
오 수 처 리	•진례맑은물순환센터 •발생량 : 64.0톤/일 계획	_	_	-		
폐기물 처리	•발생량 : 150.29톤/년 계획	-	-	-		

## 2. 관리기본방향 (변경없음)

- 경남 지역내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
- 업종별 연관관계를 고려한 배치계획으로 산업기능 활성화 유도
-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

#### 3. 관리기본계획 (변경)

#### 가.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(변경)

#### 1) 용도별 구획면적 (변경)

	구 분	면 -	적(m²)	비고
	丁 世	기 정	변 경	
	계	162,182.0	162,491.6	
	산업시설구역	106,804.0	106,836.5	
C10	식료품 제조업	8,264.4	8,287.3	
C22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	12,112.3	6,159.4	
C22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,		E 204.2	
C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	_	5,284.2	
C22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,		F C2F 0	
C29	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	_	5,635.9	
C23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9,961.0	9,954.6	
C24	1차금속 제조업	5,247.6	2,933.3	
C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기계 및 가구 제외	14,676.4	28,014.5	
C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5,015.5	_	
C29	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	34,437.2	18,658.1	
C30	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	12,085.8	14,755.4	
C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5,003.8	7,153.8	
	지원시설구역	2,404.0	2,381.8	
	공공시설구역	32,270.0	32,289.1	
	주 차 장	3,502.0	3,486.5	
	배 수 지	726.0	722.9	
	저 류 지	4,650.0	4,625.8	
	도 로	23,392.0	23,453.9	
	녹지구역	20,704.0	20,984.2	
	공 원	2,977.0	2,977.1	
	완충녹지	5,042.0	_	
	기타(사면)녹지	12,685.0	18,007.1	

#### 2)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(변경없음)

#### 가) 산업시설구역

(1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8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

#### 나) 지원시설구역

- (1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한 건축물
- (2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9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- (3)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에 의한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, 판매 및 영업 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
- (4) 폐기물의 수집, 운반, 처리업을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

#### 다) 공공시설구역

(1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의5에 따른 공공시설 및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장 및 부대시설

#### 라) 녹지구역

(1)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

#### 3) 용도별구역 평면도(변경): 별첨 1

#### 나. 입주관리계획 (변경)

1) 입주대상업종 (변경)

#### 가) 산업시설구역 (변경)

(1) 식료품 제조업(C10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,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C23), 1차금속 제조업(C24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: 기계 및 가구 제외(C25), <del>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</del>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, 제외),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D35)

#### 2) 입주자격 (변경없음)

#### 가) 산업시설구역

- (1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,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서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
- (2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관리 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

#### 3) 입주우선순위

○ 해당없음

#### 4) 입주제한 (변경)

- (1)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0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(단, 같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)
- (2) 「물환경보전법」제2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(단, 「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」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해당시설과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은 예외로 함(단,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 설치자는 제3조 제3항 [별표2]를 준수하여야 하며, 같은 고시 부칙 제3조에 따른 기한 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))

- (3)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4 제2호의 도금시설
- (4)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·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
- (5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
- (6)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6가크롬 및 포름알데히드 배출사업장
  - ※ 지구단위계획 내 산업시설용지 불허용도 참고

## 다. 업종별 배치계획 (변경)

#### 1) 배치계획 (변경)

(단위: 개사, m²)

구 분		업체	] 수	면	적	비고
	l r		변경	기정	변경	(산업분류)
	합계	28	31	106,804.0	106,836.5	-
	식료품 제조업	2	2	8,264.4	8,287.3	C10
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4	2	12,112.3	11,795.3	C22
산업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	-	1	_	5,284.2	C22, C25
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,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	-	1	-	5,635.9	C22, C29
시설	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	1	1	9,961.0	9,954.6	C23
구역	1차금속 제조업	2	1	5,247.6	2,933.3	C24
	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	6	10	14,676.4	28,014.5	C25
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1	_	5,015.5	_	C26, 제외
	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	6	7	34,437.2	18,658.1	C29
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5	4	12,085.8	14,755.4	C30
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1	2	5,003.8	7,153.8	C31
전기,	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_	_	_	_	D35

※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D35)은 사업구역 내 전 지역에 설치되는 업종임

#### 2) 배치기준 (변경없음)

- (1) 입주대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
- (2)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고려하여 배치

#### 3) 업종별 배치계획도(변경) : 별첨 2

#### 라.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(변경없음)

○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단지관리지침」에 따라 관리

#### 1)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시설용지 분할 기준

(1) 「산업집적법 시행규칙」제39조의3(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) 제2항의 "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"과 관련하여「산업집적법」제15조 각 항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 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(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)의 최소 분할면적은 1,650㎡ 이상으로 함.

#### 2) 환경관리

- (1)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, 대기오염, 소음.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,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 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
- (2) 관리기관은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

#### 3) 안전관리

- (1)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및 재해복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
- (2)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, 공해,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,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
#### 4) 기반시설관리

(1)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, 전력,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

별 첨

- 1. 용도별구역 평면도(변경)
- 2. 업종별 배치계획도(변경)

# [별첨 1] 용도별구역 평면도 (기정) 3 7 장 38-15 원 산5 왕 산1 1 6 임 38 달 38-1 公人 AH9 SM 산1 1 2 - 2 임 4113-19 산1 950-5 8 以美国的 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원 산 업 시 설 용 지 X II 자 3435

## [별첨 1] 용도별구역 평면도 (<mark>변경</mark>) 37장 산116임 산5임 38-15 임 N 38답 38-1 장 산8-1임 2장 -1 장 52-4장 47-4 장 H8-293 산112-2 임 47-7장 산113-1임 47-8 장 산110 산19-1 임 120-1 81 산20-2 임 303도 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원 -320-9 임 XI 343도 저 IJ 산23-4도 J 291 장

#### [별첨 2] 업종별 배치계획도(기정) 375 산1 16일 산5 임 38 1 6 75 38-1 참 (추)제일소병 TIEFER A=9,961.0m (C23) do 저뿌지 A=943 0 (C25) 중보티에이제 A=2,175.0㎡ (C30) A=1.659.0 學차정 (李) 구보 =4.971.0 (C29) (C30) 인우하이텍 A=4,755.0 (주)구보 A=5,289.0» 에스원산업 A=1,821.0 (C29) 부경프리스틱(주) A=6,629.5㎡ (C30) (C22) (추)케이지앤에프 A=6,611.6# E #X18021 공위 주자장 (C10) (I) AH 10 8 のと無な A=2,148.7 (C30) (주)미도산업 A=1,652.9m (C25) 완충복지 0/20 (C29) (주)구보 A=3,806.0 선원 0 - 은 명 파안에이치율당 A=2,149 1 (C29) 부상양진양 제2배후둔로 민리투자시업 (季)口鹽料型리아 A=4,628.8m (C25) 구 분 한 국 표 준 산 업 분 류 (C22) 식료품 제조업(C10) 고무제품 및 클라스틱제조업(C22)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) 1차금속 제조업(C24) 금속가공제품 제조얼:기계 및 가구 제외(C25) 3 0 3 철도 전자제품,컴퓨터,영상,음향 및 총신장비제조업(C26)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(C29)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(C30) 20-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 M23-45 2 94

